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. 7. 19 선고 2023가단5477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

담당 변호사 전수려, 방인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7. 5.

판 결 선 고 2023. 7. 19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2022. 12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3. 2. 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, 1)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3. 1. 6. 접수 제1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, 2)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3. 2. 8. 접수 제13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사실관계

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제3호증의 1 내지 3, 제4호증, 제5호증, 제6호증의 4,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.

1) 원고는 C에 대하여 구상금 15,172,602원과 그중 15,000,000원에 대하여 1995. 11. 10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18%,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5991).

2) D이 2022. 10. 3. 사망함에 따라 C, E, 피고, F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D의 재산을 각 4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.

3) C, E, 피고, F은 2022. 12. 23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, 피고는 2023. 1. 6.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4) C, E, 피고, F은 2023. 2. 4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, 피고는 2023. 2. 28.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5)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.

나. 판단

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위 공유지분을 처분하였으므로,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원고를

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도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위 각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이유빈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대 306㎡

2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백률조 슬라브지붕2층 단독주택

1층 98.89㎡

2층 95.74㎡

3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

도로 24㎡

- 이 상 -

